



HIV/AIDS 감염인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발행 :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책임집필 엄기호

만든 사람들
곽경호, 권미란, 김동숙, 김상덕, 미류, 변진옥, 윤호제, 정을, 최준원

편집 강태성

함께하는 이

행동하는 의사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정보자료실
Mf1.2

인권정보자료실
Mf1.2



인권지침서

HIV/AIDS 감염인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국민 모두가 알고, 국가가 지켜야할
HIV/AIDS 감염인의 인권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를 위한 모임 서울터

+ 인권지침서

HIV/AIDS 감염인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국민 모두가 알고, 국가가 지켜야할 HIV/AIDS 감염인의 인권

HIV/AIDS +

+ HIV/AIDS

- 05 | 짚고 넘어 갑시다
- 08 | HIV/AIDS 감염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 16 | 이런 분들은 인권에 민감해야 해요
- 20 | 이런 분들은 특별히 인권이 보호되어야 해요
- 24 |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 HIV/AIDS

HIV/AIDS 인권모임 나누라+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를 위한 모임 서울터

人權人權
人權人權

인권지침서

발행 :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나누리+는 동성애자인권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남성동성애
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의사회, 그 외 개인이 함께 모여 만든 인권
모임입니다. 나누리+는 HIV/AIDS 감염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나누리+에서는 HIV/AIDS 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질병으로 고통 받
는 감염인과 환자들의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HIV/AIDS
인권 지침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조록 이 인권 지침서가 HIV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
을 없애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HIV/AIDS 감염인에게
삶의 권리를!!

人權人權

HIV/AIDS감염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 사생활과 익명성이 보장될 권리가 있어요!
- 에이즈와 관련된 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 에이즈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어요!
- 교육을 받고 여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인권에 민감해야 해요

- 보건의료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인권에 민감해야 해요
- 병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인권에 민감해야 해요
- 언론인들은 인권에 민감해야 해요
- 교사 등 교육인들은 인권에 민감해야 해요

이런 분들은 특별히 인권이 보호되어야 해요

- 동성애자의 인권이 특히 보장되어야 해요
- 수감인들의 인권이 특히 위험해요
-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이 특히 위험해요

짚고 넘어갑시다



● 아파본 적이 있으세요?

HIV/AIDS

05

사람이 제일 외로울 때가 아픈 데 옆에 아무도 없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도 병원 가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은 고사하고 자신의 병명이 알려지면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할까 두려워 감히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이나 되는 것처럼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공공연하게 병명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둘 것을 종용합니다. 이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임신하고 있는 중이라면 낙태해야만 한다고 압력을 가합니다.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갈때도 그 병을 앓고 있다고 알려지면 입국이 거부당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침상 머리맡에 커다란 글씨로 당신은 특별한 병을 앓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간호사는 물론이고 눈치 빠른 다른 환자들도 어쨌든 당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차별과 외면, 그리고 소외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 아파도 아프다고 말조차 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HIV/AIDS 감염인들입니다

● 에이즈는 쉽게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 많은 차별과 외면은 에이즈라는 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이즈가 일상생활에서 손만 대어도 전염되는 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에이즈가 그리 쉽게 전염되지 않는 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는 에이즈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 병의 원인과 전파경로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요사

이 공포가 되고 있는 조류독감이나 SARS처럼 병의 원인과 전파경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에이즈는 그 원인과 전파경로가 이미 다 알려진 관리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전파경로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전혀 전염될 일이 없는 병입니다.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t Virus)는 아주 약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성행위나 수혈등과 같이 바이러스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이상 전염의 가능성은 마른하늘에서 벼락에 맞은 다음 곧바로 미친개에 물려죽을 확률보다 더 낮은 병입니다. 그런 잘못된 지식과 함께 이미 만들어진 공포심이 확대된 것입니다.

● 에이즈는 걸리면 바로 사망하는 병이 아닙니다.

에이즈에 대한 공포의 두번째는 에이즈가 마치 감염되고 나면 바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병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이즈가 세상에 알려진 초창기에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너무나 끔찍하게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들¹⁾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짐으로써 그 공포가 더욱 컸습니다. 물론 에이즈에 대한 완치제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성행위를 할때와 수혈을 할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완치제는 아니더라도 치료제가 꾸준히 개발되어 있어서 현재 에이즈는 관리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정상인처럼 할 수 있는 병이며, 심지어는 당뇨병처럼 만성질환화한 병으로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이즈에 걸리기만 하면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은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1) 흔히 HIV감염인과 AIDS환자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환자는 인체의 세포성 면역에 관계하는 CD4 림프구가 파괴되고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기회감염성 질환에 걸릴 수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하지만, HIV감염인은 건강관리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면 일상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HIV/AIDS 감염인을 일상생활에서 외면하고, 차별하고, 소외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HIV/AIDS 감염인을 죽이고 확산시키는 것은 에이즈가 아니라 에이즈에 대한 공포이며, 차별입니다.

Q. 그래도 에이즈 확산 저지를 위해서 감염인들을 격리하고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 보건을 위해서는 감염인들의 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확산저지를 위해서 그들을 격리해야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감염인들을 격리하여 에이즈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것은 그 인권침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예방이라는 점에서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HIV/AIDS는 공기나 물을 통해 전파되거나 또는 일상적인 접촉으로 감염되는 것이 아니기에 결코 격리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온 국민을 검사한 다음 모든 감염인을 격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론적으로도 에이즈 검사는 3개월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지구화된 세계에서 한국을 왔다갔다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검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모든 감염인에 대한 완벽한 선별과 격리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이런 격리를 통해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것은 중세시대에서나 상상해볼만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감염인에 대한 인권탄압과 도덕적 지탄은 이들을 더욱 더 지하로 숨게 함으로써 감염을 더욱 촉진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오히려 과학자들과 인권운동가들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감염인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정책**이라고 합니다.

07



오히려 지금까지의 에이즈 예방과 관련된 연구와 활동, 다양한 정책이 가져다 준 교훈은 모든 사람들이 에이즈 검사를 공포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감염인들이 현재의 높은 수준의 치료를 보장받으며, 예방과 관련한 적합한 지식에 접근하여 안전한 섹스를 실천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만이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예방은 억압이 아닌 인권 보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HIV/AIDS 감염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HIV/AIDS 감염인에게는 다른 사람들 모두와 마찬가지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권리는 바로 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인간의 천부적 권리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로 HIV/AIDS 감염인은 '차별받지 않고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HIV/AIDS 감염인은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이즈 감염인은 '사생활과 익명성이 보장될 권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HIV/AIDS 감염인은 '에이즈와 관련된 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HIV/AIDS 감염인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HIV/AIDS 감염인은 '에이즈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권

리'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HIV/AIDS 감염인은 '교육을 받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IV/AIDS 감염인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권리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HIV/AIDS 감염인은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09

모든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양질의 정신적, 물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요. 특히 가난하거나 특이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질병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차별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가 되겠지요. 이처럼 HIV/AIDS 감염인들 역시 다른 환자와 동등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병원들이 HIV/AIDS 감염인을 치료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지방에서 한 감염인은 공사장에서 일하다 떨어져서 오른쪽 다리 뼈에 조각이 났지만, 수술이 예정되었던 병원도, 그 지역의 3차 병원도 슬금슬금 미루다 6개월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름이 질질 흘러 다리가 통통붓게 되자 서울의 병원으로 급하게 입원했지만, 만성골수염으로 한쪽다리가 짧아지는 장애를 갖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병원들은 그런 특별한 환자를 다룰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B형 간염 감염인들이 특정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고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하지는 않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B형간염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훨씬 약한 바이러스이며 따라서 감염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덜한 바이러스입니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치료도중 감염의 위험이 특별히 높은 수술이나 처지가 아닌 이상 HIV/AIDS 감염인들을 치료하기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2. HIV/AIDS 감염인은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에이즈와 관련된 약품은 다른 약품에 비해 그 개발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다른 모든 환자와 마찬가지로 HIV/AIDS 감염인들은 자신에게 더 맞는, 부작용이 더 적고 효과가 더 좋은 최신의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아 생명을 보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이즈 치료제는 그 약값이 아주 비싼 편입니다. 이것은 몇몇 거대한 제약회사들이 그 약의 연구, 생산 과정, 그리고 성분 및 제작 과정을 독점하고 선진국들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온갖 압력과 제약 때문에 성분은 비슷하지만 약값은 훨씬 더 싼 카피약을 만들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따라서 거대한 제약회사들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을 대폭 폐지하여 카피약 생산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야하며, 치료제의 연구 및 개발 과정을 제약회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UNAIDS와 같이 국가간 협력기구에서 공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제가 있는데도, 그 치료제가 너무 비싸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 치료제를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다행히 정부가 치료제 전액을 감염인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감염인 수가 더 늘어난다면 비싼 약값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큰 재정적인 압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값을 낮추어 감염인들이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3. HIV/AIDS 감염인은 사생활과 익명성이 보장될 권리가 있어!

HIV/AIDS 감염인에게서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회적 차별과 멸시

입니다. 아무리 에이즈가 쉽게 전염되지 않고, 감염과 동시에 죽는 그런 병이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에이즈에 대해 무시 무시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포가 심하면 심할수록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더욱 더 커집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할때 HIV/AIDS 감염인의 사생활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감염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감염인의 동의없이 그 누구에게도 그 사람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HIV/AIDS 감염인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은 감염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보건소 직원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위에서는 그 사람이 혹시 에이즈에 감염된 것인가하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에이즈 감염들과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는 감염인들의 동의하에서만 언론이나 기타 매체에 알려져야 합니다. HIV/AIDS 감염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역학조사 등과 같은 것이 감염인들의 동의없이, 사용목적과 별개의 목적으로 언론 등에 알려지는 것은 명확한 인권침해입니다.

4. HIV/AIDS 감염인은 에이즈와 관련된 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

모든 사람들은 국가가 정하는 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그 정책이 자신의 생명이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는 더욱 정부는 그 사람들의 정책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국가들의 연합체인 유엔에서도 에이즈 예방, 상담, 관리 등과 관련된 정책이 결정될 때는 반드시 감염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에서 HIV/AIDS 감염인들의 참여는 중요합니다. HIV/AIDS 감염인들이야말로 다른 HIV/AIDS 감염인들의 처지를 잘 알고, 어떤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즈 관리나 치료와 관련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에는 에이즈전문병원을 설립하

는 것이 HIV/AIDS 감염인들의 인권과 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방법일 수 있으며, 어떤 사회에서는 전문병원보다는 모든 의료시설에서 편리하게 치료에 접근하는 것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HIV/AIDS 감염인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5. HIV/AIDS 감염인은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노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하지 않는 것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사회적 좌절감 역시 큰 것입니다. HIV/AIDS 감염인은 노동의 성격과 작업장의 여건이 특별히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 아닌 이상, 모든 노동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해고가 발생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과 그 사람의 노동력과 그에 따른 생산성에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는 사업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직장건강검진 때 에이즈 검사도 같이 하는데 대부분 노동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가 보통은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사생활과 익명성 보호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더구나 이 결과에 따라 해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따라서 직장건강검진에서 에이즈 검사를 할 경우에는 노동자들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그 결과는 절대 사업주에게 통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업 제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HIV/AIDS 감염인의 직업을 제한할 때 보다 엄격해야 합니다. 그 직업과 작업장의 여건이 감염의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업종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6. HIV/AIDS 감염인은 에이즈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어!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곧 평등과 민주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정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그릇된 상식을 깨는 것도, HIV/AIDS 감염인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에이즈 정책에 참여하는 것도, 보다 더 나은 치료를 요구하고 보장받는 것도 이 정보접근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기관은 HIV/AIDS 감염인에게 최신의 의학 정보와 정책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고, HIV/AIDS 감염인들은 그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치료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개발이 빨리 되는 편입니다. HIV/AIDS 감염인은 어떤 약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그 부작용과 처치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에이즈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방방법을 숙지한 HIV/AIDS 감염인과의 성행위가 가장 안전한 성행위 라는 말이 있습니다. HIV/AIDS 감염인들을 격리하고 억압하는 것보다, 에이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이 성행위와 수혈 등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행동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더욱 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13

7. HIV/AIDS 감염인은 교육을 받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들의 천부적 권리이며,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차별과 배제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HIV/AIDS 감염인은 비감염인과 마찬가지로 교육현장에서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에이즈를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에이즈에 대한 무지는

HIV에 걸린 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전학을 종용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육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정부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HIV 감염 사실로 인해 교육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다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교육권과 관련하여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유학과 관련된 일입니다. 소위 인권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유학생을 받을 때, 에이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교육 능력과 에이즈 감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데도 HIV/AIDS 감염인에게는 유학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교육권의 침해입니다. 유엔의 인권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는 각 나라 정부에 이 인권침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HIV/AIDS 감염인은 특별히 자신의 건강이 위협에 처해있지 않는 한, 어떤 나라든지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과거에는 입국할 때 입국목적과 상관없이 에이즈 검사 결과를 통보해야만 했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몇몇 나라에서는 입국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에 에이즈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이즈 확산을 저지할 목적이라는 이런 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산 저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심지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8. HIV/AIDS 감염인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목적입니다. HIV/AIDS 감염인 역시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추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로 가족이 해체되지 않을 권리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HIV/AIDS 감염인들이 마음 편히 쉬고 상담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삶에 대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은 감염 초창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감염인들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육체 건강을 소홀히 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손상된 육체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감염인들이 마음 놓고 설 수 있는 감염인들의 쉼터가 확대되어야 하고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 및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HIV/AIDS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주가 제한되거나 이사를 가라는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동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HIV/AIDS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특정 교통수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 등에서 숙박하는 것이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 생활이 행복 추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HIV 감염을 이유로 유산을 중용받아서는 안 됩니다. 출산이 아이에게 감염의 위험을 특별히 높이지 않는 이상, 감염방지를 위해 현재 개발된 최신의 의료 기술을 통하여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산이 권장되는 경우에도 산모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HIV/AIDS 감염인들 역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에이즈 확산 저지를 위해서도 이것이 가장 좋은 예방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HIV/AIDS 감염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특히 민감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특별히 인권이 보호되어야 할 사람들은 또 누구인지를 알아봅시다.

이런 분들은 인권에 민감해야 해요



**보건의료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인권에 민감해야 해요!**

대부분의 감염인이 가장 먼저 감염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보건소나 병원에서의 검사결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일차적으로 알려주고 이후에 꾸준히 접하는 사람들은 보건소, 동사무소,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검역소, 혈액원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검사결과가 나오면서부터, 감염인이 제대로 감염사실을 받아들이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정확하게 상담해주는 것은 바로 이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몇 보건의료관련 공무원들은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해서 감염사실만으로 느끼는 충격을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비인권적인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검사결과를 아는 순간부터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적인 노출은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하여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관련한 공무원들은 검사, 통보, 면담, 정기적인 면역기능검사와 같은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검사결과를 알려줄 때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감염경로를 추적한다는 미명으로 굴욕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셋째, 감염인 본인의 동의없이 감염사실을 주위에 알리는 등 감염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주의를 기울여

야 합니다. 네번째, 질병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치료비 환급이나, 의료 급여신청과 같은 절차를 충분히 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즈와 관련된 낙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말로는 익명검사지만, 실제 결과는 누구라도 알 수 있고 비밀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검사를 받으려할까요? 반인권적인 정책은 오히려 감염인을 검사를 기피하여 감염전파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인권을 보장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면역결핍증이라는 단순한 질병에 걸렸을 뿐인 이들이 이 사회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17

병원 등에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인권에 민감해야 해요!

병의원에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들은 감염인의 '치료'에 실제 필요한 의 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치료는 항바이러스제 투여 는 물론이고, 면역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감염질환부터 부상까지 일반인과 똑같이 치료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 건의료인들이 에이즈에 대해 갖는 인식과 태도는 감염인의 인권과, 아플 때 바로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노출이 환자의 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지 모르는 의료인이 많아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감염인이 많습니 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별도로 표시하는 것과 같은 감염사실노출은 감염 인에게 정말로 큰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를 비롯 한 의료인의 건강을 지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임상정보의 비밀 을 보장함으로써 감염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의료인의 윤리입 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의료인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없이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감염사실을 강제통지하

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 대기자나 다 른 환자들에게 은연중에 감염사실을 노출시키는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없이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되며, 정기적 인 검사과정에서 환자의 동의없이 실명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 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인이라고 해서 치료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안타 깎게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전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병원명성에 해 가 될까봐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답니다. 더욱이 입원을 해서 실질 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의 3개 병원정도에 불과해, 지방에 거 주하는 감염인은 치료를 위해 매번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감염인의 기본적인 의료이용권과 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줄 수 있도록, 그나마 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보건의료인이 나서야 합니다.

언론인들은 인권에 민감해야 해요!

언론은 현대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 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진실로 믿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론인들은 인권과 관련한 보도를 할 때 특히 자신의 기사가 언 론 침해적인 요소가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에이즈와 관련된 보 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언론인들은 에이즈와 관련된 보 도를 할 때 HIV/AIDS 감염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감염인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그것이 감염인들 의 태도와 행동과 관련된 기사일 때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사실을 보도하 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그 것은 인권을 촉진시키는 것도, 인권 증진을 저해하는 것일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HIV/AIDS 감염인들 중에서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사 람들에 대한 보도가 있습니다. 많은 수의 감염인들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 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통제와 관리를 강화해야하며, 감염

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리방식이 감염인들로 하여금 주위사람들에게 신분과 감염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현재 관리 방식의 반인권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인권적 시각을 견지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남성동성애자, 수감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에이즈 문제를 보도할 때 이들의 태도에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들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큼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므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탄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을 더욱 더 지하로 숨게함으로써 예방과 확산저지에도 해악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에이즈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 집단을 보호할때 이들에 대한 따뜻한 인권적 시각을 언론인들이 견지하는 것은 에이즈 인권과 예방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9

교사 등 교육인들은 인권에 민감해야 해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등 교육인들은 우리 아이들이 인권적 감수성을 가지고 자라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에이즈 인권과 관련해서 특히 인권 감수성이 요구되는 분들은 성교육 교사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의 성교육은 인권보다는 '공포에 기반한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병에 대한 공포에 기반하여 예방 교육을 선행하다보니 뜻하지 않게 성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임신한 친구들에 대한 도덕적 지탄과 인권 침해로 유발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신한 친구들이나 성병에 걸린 친구들은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숨기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하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에이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즈 예방 교육이 에이즈에 대해 조심하는 것에 초점

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기반을 두고 있음으로써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공포를 낳고 있습니다.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을 증진시켜야할 교육현장에서 편견과 차별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의 성교육 교사들부터 에이즈를 제대로 알고, HIV/AIDS 감염인들의 인권을 제대로 숙지하여 교육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인권이 보호되어야 해요



남성동성애자의 인권이 특히 보장되어야 해요!

에이즈가 동성애라는 공식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대표적인 편견 중 하나입니다. 이런 편견은 19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러한 보수적인 에이즈 정책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인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에이즈와 관련한 모든 교육과 정책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험집단으로 분류하고 특별관리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어 마치 동성애자들을 잘 관리하면, 에이즈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리정책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오류를 낳습니다. 사회적 낙인은 많은 동성애자들을 자신의 존재조차 밝히지 못한

채 음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성애자들로 하여금 자신과는 하등 관계없고 에이즈로부터 안전하다는 잘못된 무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올바른 예방행동에도 걸림돌이 되어 에이즈 확산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동성애가 에이즈의 직접원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감염원인을 밝히는 공개적 자료에서는 동성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통계적인 수치로 보았을 때도 감염확률이 이성간의 성적 접촉보다 특별히 더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에이즈는 미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집단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전파경로와 원인이 알려져 관리 가능한 하나의 질병일 뿐입니다. 인권은 소수자를 격리시킴으로서 얻어지는 다수자의 혜택이 아니며, 인간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 도덕은 더 이상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닌 폭력일 뿐입니다. 역사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수감인들의 인권이 특히 위험해요!

더욱이 인권의 사각지대인 수감시설에서의 감염인 재소자의 인권은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재소자들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격리되며, 감염사실이 공개되면서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갖은 비난과 존엄성 훼손 등 철저하게 이중 삼중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UNAIDS(에이즈에 대한 국가연합프로그램)은 입소, 석방시 강제로 HIV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HIV 감염에 따라 독방과 같은 특정장소에 구금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감염사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 것, 강제로 검사하고 감염여부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입과 이동의 조건으로 감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도록 강요하는 것은 감염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리고 의료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면에서,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건강보호 및 치료에 관한 국제기준들은 수용자들의 건강권이 일반인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수감시설 수용자 예방이 에이즈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국내 교정시설에서 감염사실에 대한 비밀은 거의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염사실의 노출로 동료 수감인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감시설의 폐쇄적인 구조상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수감시설의 근무자들은 재소자 감염인들의 감염사실을 절대로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감염인의 인권보장과 비밀보장, 그리고, 치료접근성 확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특히 위험해요!

국제법에서는 모든 정부들이 자국의 영토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자국의 시민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보호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국가의 시민이 아닌 사람도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온 이주노동자이건, 불법적으로 온 이주노동자이건 그 사람이 HIV/AIDS 감염인인 것이 확인되면 강제 출국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나마 몇몇 선진국에서는 간단한 의료 처치라고 한 후에 강제 출국하지만 우리 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아무런 조치없이 강제로 출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몇년전 아프리카에서 온 한 이주노동자는 HIV/AIDS 감염인임이 확인된 후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강제 출국을 당하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사망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의 인권기관들은 에이즈와 관련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와 관련하여 이민을 금지하거나 강제출국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에이즈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상담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치료 및 의약품 접근권

과 관련해서는 불법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아예 치료권 자체가 박탈당해 있는 상황이나, 합법 이주노동자라도 하더라도 자국의 노동자에 비해 병원 등에서 차별 받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 인권 기관을 비롯한 인권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에이즈와 관련하여 1) 익명성과 충분한 상담이 뒤따르는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2) 에이즈에 감염된 이주노동자가 자국의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치료와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3) 에이즈와 관련된 이민 제약을 철폐할 것, 4) 에이즈와 관련된 강제 출국을 폐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할 것, 5) 국제노동력 수입업체들에 의해 자행되는 에이즈 관련 인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감사할 것, 6) 특히 국제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당한 피해자들의 건강권과 치료권을 그 합법적 지위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이 특히 위험해요!

성매매여성들은 6개월에 한번씩 보건소로 가서 채혈을 해야 합니다. 성병과 AIDS 등의 검진을 위해 국가는 법으로 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구요? 그렇죠.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어 성매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가 강제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구요? 글썄요. 실효성도 없는 정책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신체의 권리가 훼손된다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입니다. HIV의 경우, 여성에게서 남성으로 전염될 확률보다 남성에게서 여성으로 전염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즉, 성매매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성구매남성들이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이지요. 성매매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입니다. 1년에 두 번

씩 끌어다가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그녀들을 보호하지도 못할뿐더러,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들'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책과 자활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탓에, 그녀들은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사회에 그녀들이 발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성매매현장은 이 시대의 가장 잔혹한 인권유린의 현장입니다. 성구매남성들이 콘돔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 탓에 성매매여성들은 감염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에이즈 치료제의 '마루타'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매매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제검진이 아닙니다.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자활대책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 지침 1. 국가는 HIV/AIDS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인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 전략은 통합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각각의 정부기관의 HIV/AIDS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지침 2. 국가는 HIV/AIDS 정책을 디자인하고 프로그램을 이행,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서 지역사회가 자문할 수 있도록, 또한 지역사회 조직이 윤리, 법, 인권의 영역을 포함하여 그들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지침 3. 국가는 공공의 건강을 다루는 법을 검토하고 개혁해야 한다. 법은 HIV/AIDS를 통해 드러나는 공공건강이슈를 적절하게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혼란 전염성질환에 적용되는 조항이 HIV/AIDS에 대해 부적절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법은 국제인권규범에 합치되어야 한다.
- 지침 4. 국가는 형법과 교정체계를 재검토하고 개혁해야 한다. 형법과 교정체계는 국

제인권규범에 합치되어야 하며 HIV/AIDS와 관련된 정황에 오용되거나 취약계층을 표적으로해서는 안된다.

지침 5. 국가는 차별금지법과 기타 보호입법을 제정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그 법은 공적, 사적 영역에서 차별 받고 있는 취약계층과 HIV/AIDS 감염인,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하며 그/녀들의 프라이버시와 비밀, 인간을 포함한 연구에서의 윤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 화해를 강조해야 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적, 시민적 구제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지침 6. 국가는 HIV 관련 재화와 서비스, 정보의 조정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 법은 질이 높은 예방기재와 서비스, HIV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적절한 가격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광범위하게(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침 7. 국가는 법률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나 이행해야 한다. 법률지원서비스는 HIV/AIDS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관하여 교육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HIV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구제기구-법원, 법무부, 옴부즈만, 건강제소단위, 국가인권위원회 등-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지침 8. 국가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편견과 불평등에 시달리는 여성, 아동, 그 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사회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회서비스와 건강서비스,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토론되어야 한다.

지침 9. 국가는 창조적인 교육, 훈련, 언론 프로그램의 폭넓고 지속적인 분배를 촉진해야 한다. 그것은 HIV/AIDS와 관련된 낙인과 차별의 태도를 이해와 수용으로 바꾸는 것을 명백하게 의도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지침 10. 국가는 정부와 사적영역이 HIV/AIDS와 관련된 행동 규범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 규범은 인권의 원칙들을 전문직의 책임과 실천의 규범으로 바꾼 것이어야 하며 이 규범들을 강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제도와 병행되어야 한다.